



**제주지역 감귤상자 품질규격 불합리  
95년도 곽판지상자 품질분쟁 발생 우려**

국내 품목별 농산물 포장중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감귤 포장용 곽판지상자의 품질기준이 제주도내 농협, 작목반등 구매 주체별로 다른가 하면, 현행 농협규격이 현실과 불합리한 점이 있어 포장품질의 불신으로 인한 분쟁 발생 및 수급 불안정의 우려의 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곽판지상자의 품질은 곽판지원지 배합, 파열강도, 상자 압축강도, 발수도 등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각 구매 단위별로 상이하고, 제시되고 있는 농협의 구매 사양서상 요구품질과 실제 생산 납품 요청한 곽판지상자와는 큰 차이가 있어 분쟁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 KS 규격상 곽판지 종류인 DW2종은 파강 14.0 Kgf/cm<sup>2</sup> 이상, DW3종은 18.0 Kgf/cm<sup>2</sup>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농협이 제시하는 전상과 열강도 19.3 Kgf/cm<sup>2</sup>은 DW3종에 해당하나, 이 기준은 지난 1989년 이전 KS개정전 기준이며, 습상과열강도 5.8 Kgf/cm<sup>2</sup>의 경우, 종이에 수지를 첨가한 곽판지원지를 사용해야하며, 내수도 2호 및 발수도 2호의 기준 또한 수분허용치 기준과 관련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품질기준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제시된 품질기준에 충족시킬수 없는 곽판지상자 품질

기준은 원칙적으로 곽판지상자 거래 기준가격을 설정할 수 없으며, 품질불량품이라는 불신으로 분쟁소지를 안고 있어 95년도 사용 감귤포장용 곽판지상자 품질에 대한 기준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와 관련하여 곽판지 및 곽판지상자 제조업체 단체인 한국곽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이사장 유현기)은 지난 7월 20일자 산하조합원사 관계자 회의를 소집하여 품질기준 및 개선대책 협의회를 열어 제주지역 농협관계자와 감귤포장용 곽판지상자 포장규격 합리화 및 수급안정 대책 수립을 제의한 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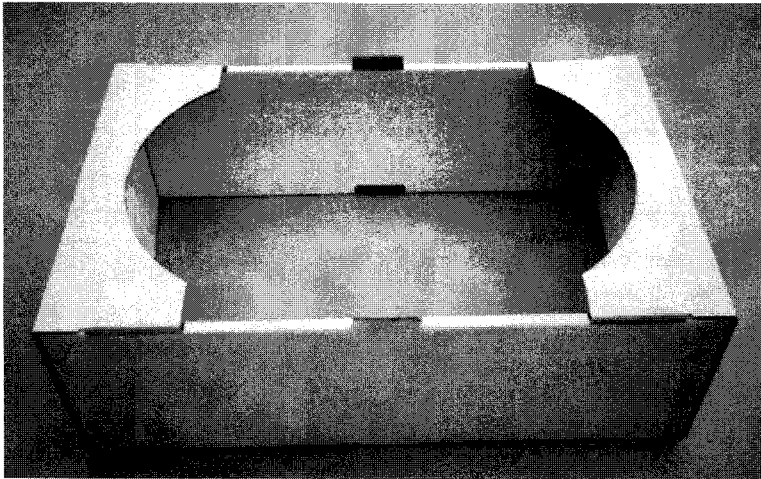
( 파강단위 Kgf/cm<sup>2</sup> 압강 Kgf )

구 분	원지배합사례	파 강	압 강	비 고
실제납품되는 품질 기준	KA240 x 강S240 x KA240 x 강S240 x KA240	18.0	600±5%	
	KA240 x 강S200 x 강S200 x 강S200 x KW240	14.0	600±5%	
	KA240 x K230 x S120 x 강S240 x K230	12.0	550±5%	
	KA240 x K250 x K250 x K250 x KA210	16.0	600±5%	
농협제시 품질기준		19.3	650±5%	습상과강 5.8

**오픈형 다이커팅 포도상자 개발  
성흥포장(주)등 스티로폴상자 대체 성공**

농산물 포장용 골판지상자를 전문제조 하고있는 경북 경산 소재 성흥포장공업(주)(대표이사 김강현)을 비롯하여 대세포장(주)(대표이사 정만수), 중앙포장(주)(대표이사 박병찬)등은 오픈형 다이커팅 포도 포장용 골판지상자를 개발하였으며 성흥포장은 실용신안등록 (출원번호 95-8343호)을 마쳤다. 이 오픈형 다이커팅 포도상자는 종래 백색 스티로폴상자에 포도를

담아 유통하던 스티로폴 대체 용의 골판지상자로서 스티로폴상자는 공상자 이동시에도 조립상태 이어야 하며, 최근 환경정책상 환경부로부터 사용이 규제되고 있는 포장재이나, 골판지제 오픈 포도상자는 공상자시 접으면 종이 한장이며, 골판지상자 내면에 백색 라이너로 제조함으로써 값도싸 포도 농가의 호평을 받고있다.



▲ 오픈형 다이커팅 포도 골판지상자

**중량물 포장재 3중 골판지 수출  
한우포장, 싱가포르에 첫 출하**

3중 골판지를 생산하고 있는 (주)한우포장(대표이사 서무철)이 국내 최초로 3중 골판지를 수출하게 되었다.

기계, 자동차, 컴퓨터등 중량물 포장재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3중 골판지는 그동안 전량 미국, 일본 등지로부터 수입하여 왔으나, 지난 88년 외국기술도입을 통하여 94년 2월 부

터 국내 최초로 생산하게 되었으며, 내수산업으로만 인식되어 왔던 골판지포장산업의 수출산업화 획을 그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번 수출한 삼중 골판지는 『트라이 월팩』이라 불리는 상품명으로 미국 연방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그 수요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나무상자에 비하여 중량이 1/4정도 가볍고, 포장용적의 10~40%절감을 기할수 있어 적재효율을 높여 물류 Cost를 절

감할 수 있는 중량물 포장소재로, 향후 기계류, 군수품 포장등에 다량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우포장은 금번 싱가포르의 처녀 수출을 계기로 96년 하반기 부터는 월 10만㎡ 이상을 동남아 지역에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용산업기계 鄭渡泳 사장  
주성전문대학 실습기자재 기증**

청용산업기계 (충북 청주시 본대동 소재)대표 정도영 사장은 주성전문대학에 교육용 실습기자재 RF Millvolt meter AC Volt meter 및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자재 등 총 10종 1백8점 (6천여만원)을 기증하고 앞으로 불우한 상황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에게는 학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사의 공장을 관련학과 학생들의 실습현장으로도 개방하여 산학협동의 기반을 확립 상호 발전관계 모색에 앞장서고 있어 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골판지상자 단체규격 제정 추진  
품질 인증제도 도입기반 조성**

지난 92년에도 수박, 정육, 계란 포장용 골판지상자 등 3개 품목, 93년도에 배추, 무우, 양파, 마늘 포장용 골판지상자 등 총 7개 품목에 대한 단체규격을 제정한바 있는 한국골판지포장조합에서는 95년에는 강원대학교 제지공학과 조병목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골판지상자 단체규격 제정위원회 ( 표 1 )를 구성하고 품목별로 전담위원을 정하여 6개 품목의 단체규격제정

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7월 3일자 제1차 단체규격 제정 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재 품목 특성검토 및 초안 작성중인 골판지상자 단체규격은 포장 수요자에 대한 품질보장과 신뢰도제고를 부여하기 위한 한국골판지포장조합의 골판지상자 품질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표 1〕 골판지상자 단체규격 제정 위원회

	소 속	직 책	성 명	담당품목
위원장	강 원 대	교 수	조 병 목	오 이
위 원	경 북 대	교 수	이 중 윤	복송아
위 원	동 국 대	강 사	최 정 현	감 자
위 원	태림포장	대표이사	고 삼 규	쌀
위 원	조 합	전무이사	안 현 영	감 굴
간 사	조 합	차 장	김 진 무	화 훼

**조합 2분기 정기 이사회 개최**  
**7. 7일자, 회의규정 개정등 6개 안건 상정 처리**

지난 7월 7일 한국골판지포장공업 협동조합(이사장 유현기) 제3차 정기 이사회가 서울 양재동 소재 모란 특설 회의실에서 개최 되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안현영 전무이사의 95년도 골판지포장제조업 병역특례 지정업체 신청안대등 주요 업무보고에 이어 △ 조합회의규정 개정 △ 신규가입 조합원의 회비기준 책정 및 공법인 가입검토 △ 제 11주년 조합 창립 기념식 및 제 1회 Miss Packaging 미인 선발대회 행사추진 계획 △ 골판지상자 단체표준 품질인증제도 추진 △ 제18회 '95 골판지포장·물류 일본, 광동특구, 베트남 시찰교류 및 일본 국제 포장 기계전 참관단 파견등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한편 제2안건으로 상정된 신규가입 조합원으로는 부산 경남지역의 동흥 포장공업( 대표 강문남 ), 신흥판지공업( 대표 이진섭 ), (주) 원창판지( 대표이사 박재영 ), (주) 동광판지( 대표이사, 박현식 ), (주) 서호포장( 대표이사 박성남 ), 경북지역 삼경인쇄(주)( 대표이사 황경용 )전북지역

금정산업(주)( 대표이사 이기용 )등 7개사의 가입으로 조합원사는 72개사에서 79개사로 늘어나게 되었다.

**【 人 事 動 靜 】**

◎ 반도판지

- 유길상 이사 ⇒ 상무
- 조영삼 공장장 ⇒ 이사
- 고을곤 차장 ⇒ 부장
- 김태원 과장 ⇒ 차장
- 오우진 대리 ⇒ 과장
- 박준호 대리 ⇒ 과장
- 곽재영 대리 ⇒ 과장
- 최수만 대리 ⇒ 과장

◎ 삼원판지

- 오영근대표이사 ⇒ 김준현 대표이사
- 박재용 관리부 차장 ⇒ 관리부 부장
- 장현대 생산부 부장 ⇒ 생산부 이사
- 최찬호 생산부 대리 ⇒ 생산부 과장
- 김기석 생산부 대리 ⇒ 생산부 과장
- 유승봉 생산부 대리 ⇒ 생산부 과장
- 라중수 생산부 계장 ⇒ 생산부 대리
- 윤준환 경리부 계장 ⇒ 경리부 대리

◎ 한국수출포장공업(주)

- 김숙환 영업부 대리 ⇒ 영업부 과장
- 조규연 영업부 대리 ⇒ 영업부 과장
- 전재곤 업무부 대리 ⇒ 업무부 과장
- 김재식 전산실 대리 ⇒ 전산실 과장
- 이승목 영업부 대리 ⇒ 영업부 과장
- 박귀완 업무부 계장 ⇒ 업무부 대리

◎ (주) 창 신

유철희대표이사 ⇒ 이규명 대표이사

◎ 승리철공소 승리철공으로 개명

1. 1973년 10월 승리철공소 창설  
1995년 3월 승리철공 개명
2. 승리철공의 사훈  
바른마음, 바른정신, 바른제품
3. 승리철공의 기업 이념  
"근면 성실하고 인내하며, 분투 노력하여 기술보국한다."





**第14回 日本 IGAS '95 東京서  
9.14~18日 印刷機材 5團體 主催**

일본 IGAS '95(International Graphic Arts Show:국제 그래픽아트 종합기재전)가 오는 9.14일(목)부터 18일(월)까지 5일간 도쿄 하루미 국제전본시회장 전관 9개회장에서 개최된다.

격년제로 실시되는 동 전시회는 금 95년이 14회째로 독일의 「두루파」, 미국의 「프린트」, 영국의 「아이팩스」와 더불어 세계 4대 그래픽 인쇄쇼로

꼽히고 있다.

일본 인쇄기자재 단체인 「일본인쇄산업기계공업회」, 「인쇄기자재수입협회」, 「제판기자재협회」, 「인쇄잉크공업회」, 「전일본인쇄기자재딜러협회」 등 인쇄기자재 5개단체 연합으로 구성된 인쇄기자재단체협의회 주최, 일본 통상산업성 후원, 일본 골판지공업회 협찬으로 개최되는 동 전시회는 일본 국내 출판회사 350사, 해외출판회사

200사 계 550사가 출품하며, 전시 소간수는 3700소간으로 전회(93년) 출품 규모보다는 일본의 최근의 경제상황, 한신대지진 및 푸고등 영향으로 약간 축소한 65%규모이나, 관람자로서는 최신기술, 기자재 및 System을 집중으로 관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시기종은 옵셋인쇄기, 지가공기, 실·라벨 등 특수인쇄기, 스크린인쇄기, 화상처리제판 및 문자처리제판기자재 등이 전시되며, 인쇄기의 디지털화, 온 디멘드인쇄 등 신기법이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日本 골板紙包裝業體 94 申告所得  
RANKING 200社, 本州製紙 1位**

資料:週刊 다이아몬드(단위:百萬円)

順位	業體名	申告所得	順位	業體名	申告所得	順位	業體名	申告所得	順位	業體名	申告所得
1	本州製紙	9,618	8	日本마다이	1,582	15	사꾸라팩스	589	22	大善	421
2	東罐興業	5,679	9	日本하이파크	1,431	16	패게이지中澤	562	23	오기紙業	416
3	랭고	4,780	10	지요다컨테이너	1,187	17	兒島段보루	524	24	팩스모리	412
4	도모꾸	3,007	11	四國段보루	855	18	五洋紙工	516	25	트라이월	391
5	大日本紙業	1,865	12	크라온패키지	835	19	中央紙器工業	488	26	다나가야	374
6	사·파크	1,803	13	大和紙器	827	20	千代田紙業	430	27	石崎産業	362
7	森紙業	1,592	14	大石産業	826	21	大村紙業	426	28	日之出紙器工業	359

順位	業體名	申告所得	順位	業體名	申告所得	順位	業體名	申告所得	順位	業體名	申告所得
29	新光	353	72	協和紙工業	159	115	紀南段보루	99	158	廣島段보루	64
30	富士段보루	340	73	靜岡森紙業	158	116	昭和包裝工業	98	159	松井紙器	64
31	大陽紙業	337	74	山田段보루	156	117	山口製函	97	160	三浦紙器工業	64
32	共進패케이지	334	75	藤屋段보루	155	118	和合段보루	95	161	岐阜패케이지	64
33	合同容器	325	76	秀和	154	119	東北森紙業	94	162	西田製函	63
34	三興段보루	322	77	아이팩스	153	120	中部紙工	94	163	에이원패케이지	63
35	大塚包裝工業	317	78	關西紙器	150	121	日段	92	164	伊藤段보루 關東	63
36	本州아쓰기段보루	311	79	아마니패케이지	147	122	太平紙器	91	165	다마야	62
37	로꾸고	310	80	下園紙工業	147	123	新日本工業	91	166	第一파크	60
38	고우다	304	81	中越패케이지	146	124	日本紙工(大阪)	90	167	協和段보루	60
39	前野段보루	302	82	北埼段보루工業	144	125	昭和物産	89	168	協和패케이지	60
40	大日本팩스	299	83	橋本紙器製作所	143	126	大阪紙器工業	86	169	內藤	59
41	게이지팩크	296	84	다이당	142	127	關西紙工	86	170	東北旭段보루	59
42	北海道森紙業	291	85	田島段보루	140	128	後藤段보루	85	171	中央패케이지	59
43	中津川包裝工業	287	86	시고	137	129	大和패케이지	84	172	다이하패케이지	59
44	常陸森紙業	281	87	村瀬段보루	131	130	山口段보루	83	173	大丸板紙加工	59
45	清容器	273	88	小林紙工	130	131	東洋紙器	81	174	岡田패케이지	59
46	新江州	251	89	日本紙工(京都)	127	132	아이지製函	81	175	仙台紙器工業	59
47	協和紙工	242	90	日販製函	127	133	마다지패케이지	78	176	同和紙業	58
48	朝日段보루	224	91	세강	125	134	에무파크	78	177	千葉고바시	58
49	豊田段보루工業	223	92	北起패케이지	124	135	가루가네패케이지	77	178	小宮紙器(東京)	58
50	三協段보루	213	93	加藤段보루	123	136	와꼬	77	179	北川紙器工業	58
51	綜合패케이지	213	94	아사히	122	137	千代田段보루	76	180	시나노紙工	58
52	大日本팩스京都	206	95	東海紙器	122	138	高木包裝	76	181	十條파크	58
53	協同紙工	204	96	東海森紙業	121	139	浦野紙器	75	182	東濃고아	57
54	中桐紙器	198	97	三協商會	120	140	中川패케이지	74	183	江戶川段보루工業	55
55	日本青果包裝	195	98	日本紙器(長崎)	119	141	平岩紙器製作所	73	184	淵上段보루	54
56	富士包裝紙器	189	99	우리와오믹스	119	142	와풍段보루	73	185	도미다팩스	54
57	日本紙器(兵庫)	184	100	사가시기印刷	119	143	大東紙工	73	186	共榮段보루	54
58	아구도石原	182	101	八木段보루	115	144	木舟製函	73	187	葛西紙工	54
59	伊豫段보루工業	182	102	大日本팩스 中部	113	145	돗방컨테이너	72	188	平林패케이지	53
60	日本紙工業	179	103	구레스코	113	146	中部段보루	72	189	光陽紙器	53
61	鳥巢包裝資材	179	104	四國森紙業	113	147	小宮紙器(東京)	72	190	三幸紙器	53
62	美鈴紙業	177	105	三笠紙工業	112	148	十條段보루	72	191	山下印刷紙器	51
63	日東紙器工業	176	106	興和紙器	111	149	刈谷紙器	72	192	新日本하이파크	51
64	新日本段보루	174	107	田中木材工業	109	150	北陸紙器	71	193	고지마단보루工業	50
65	協和製函	173	108	遠州紙工業	107	151	竹內紙器工業	70	194	田中紙業	49
66	昭和카튼	172	109	日本아비리지스社	105	152	伊藤段보루工業所	70	195	小田原紙器工業	48
67	東北紙器	170	110	三幸紙器工業所	105	153	五十嵐製箱	70	196	森紙器	48
68	교도	169	111	日本紙工(福岡)	105	154	鎌田段보루工業	70	197	大日段보루	48
69	長野森紙業	166	112	中越파크	104	155	야마도야	67	198	산패케이지	47
70	三五紙業	163	113	城北紙器梱包	103	156	仙台森紙業	67	199	山陽紙工	47
71	森井紙器工業	162	114	金子包裝	101	157	고바시	65	200	十條東段보루	47

## 日本 円羽鐵工所 新鋭 Sli-Scor發表會 Order Change 0.3秒, 刃物壽命 1300万m

일본국 大阪府南河内郡狹山町 大字 羊田2080소재 주식회사 니와철공소 (株式會社 円羽鐵工所(대표이사 大村 敬隆)는 지난 95.7.21일 기후현 에나 시 소재 교와단보루주식회사 본사공장에서 신개발품 Slitter Scorer NU-250C의 공개발표회가 골판지포장업계 관계자 참석리에 성대히 개최되었

다. 동 신개발 기종의 특징은 「구조가 Simple하며, 절단면의 「찌부리짐없고, 「지분발생 적으며, 「절단면 라이너 박리 발생 아니하고, 「시트절단 없이 오더 체인지하며, 「오더체인지는 0.3초로, 「칼날의 수명은 1,333만m」의 획기적 메카니즘으로 되어 있

어, 참관자의 호평을 받았다.

오무라 사장은 제일동포출신의 실업가이며, 한국의 서릉판지(주), (주)장천, 한국수출포장공업(주), 제일산업(주), (주)반도판지, (주)성지포장 등에 니와제 Fingerless Corrugator를 수출 설치하였으며, 현재 경남 김해 소재 주식회사 동양기계(대표이사 서정보)와 기술제휴를 하여 한국의 골판지포장기계 기술수준 향상에 음적, 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기업이다.

### 주한 EU대표부 제공

## EU의 包裝 및 包裝廢棄物에 關한 指針 Directive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세계적으로 포장 및 포장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전반적인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고조되고 있는 차제에, 최근 EU가 포장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관리지침을 발표, EU내에서 시판되는 모든 포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내외 관련 기관 및 기업들의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요청되고 있다.

### 1. 주요지침 내용

#### 가. 제조(목적)

○ 포장 및 포장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줄이면서, 이의 관리에 관한 개별 회원국들간 조치를 조화시키고 아울러, 무역장벽과 경쟁왜곡을 제거하는데 있음

#### 나. 제2조(대상)

○ EU내에서 시판되는(Marketed) 모든 포장, 그리고 포장폐기물(가정용, 상업용, 산업용 포함)을 대상으로 하나, 육상, 철도, 해운, 항공용 컨테이너는 제외됨

참고로, 당초 EU내에서 생산된(Produced) 포장 및 포장폐기물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시판되는 포장이 대상이 됨으로써 수입업체, 이에 따른 역의 수출업자도 동 지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됨

#### 다. 제 4, 5조(추가조치)

○ 필수요건(Essential requirements) 준수외에 회원국들은 수거제도와 같은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함

○ 이와 관련, 회원국들은 EU 조약에 부합하는 한, 환경적으로 건전한 재사용제도를 권장(Encourage) 할 수 있음  
라. 제 6, 7조(목표 및 추진일정)

○ 회원국 정부는 재사용(Reuse) 또는 복원(Recovery)을 위해 사용후 포장물의 반환 또는 수거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2001. 6. 30 한 하기목표(Target)가 달성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최소한 포장폐기물의 50%, 65%이하(무게기준) 복원
- 최소 25%, 최대 45%(무게기준) 재생(Recycle)
- 모든 포장재질에 대한 최소한 15%이상 재생

○ 재생 및 복원능력을 보유한 회원국은 목표달성을 위해 취한 조치들이

1) 역내 시장의 왜곡을 방지하고 2)여타 회원국이 동 지침을 준수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동 지침상의 최대복원 및 재생율보다 높은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음

○ 이러한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도입할 예정인 회원국은 집행위에 사전 통고해야 하며, 집행위는 상기 조치들이 자의적인 차별수단이거나 회원국간 위장교역제한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게 됨.

○ 2005년전 추진상황, 과학조사결과, 환경영향(Eco-balance)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2000년까지 2단계 5년기간에 대해 목표를 설정하되, 상당폭 상향조정하게 됨.

○ 회원국중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대해서는 2005년까지 목표달성을 허용함으로써, 일시 유예기간을 부여하되 2001. 6. 30. 한 최소한 25% 복원의무를 부과함.

마. 제8조, 부록1(표시제도, Marking System)

○ 수거, 재사용, 복원에 따른 포장재를 식별하기 위해 96. 12. 31. 한 표시제도를 도입함

바. 제9조, 부록 2 (포장 필수요건)

○ 회원국들은 포장재가 특정의 필수요건을 준수하도록 해야하는 바, 동 필수요건은 안전, 위생, 소비자 요구 부응에 필요한 만큼의 포장무게 및 부피의 최소화, 유독·유해물질의 최소화, 재사용·재생·복원에 따른 적합성 등임

○ 동 요건에 부합하는 포장재는 96. 7. 1.부터 공동체시장에의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되고, 부합하지 않는 포장재는 98. 1. 1 부터 금지됨.

사. 제 10조(표준화)

○ 유럽표준화기구(CEN :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가 집행위의 위임을 받아, 상기 필수요건에 관한 표준을 제정하게 됨.

○ 한편, 집행위는 포장재의 원료, 제조공정,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과정 분석(LCA : Life Cycle Analysis)의 기준과 방법, 중금속 및 여타 유해물질의 측정, 그리고 환경노출, 재생원료의 최소사용량 기준, 재생 Composting, 표시제도에 관련된 기준에 관한 유럽표준의 제정을 증진해 나가도록 함.

아. 제 11조(중금속 용량제한)

○ 포장재 및 포장재 원료에 납, 카드뮴, 수은, 크롬이 98. 6. 30까지 660 PPM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99. 6. 30까지 최대 250 PPM, 2001. 6. 30.까지 100 PPM으로 낮춤으로써 점차적으로 강화해 나감(미국 표준과 일치)

자. 제 12, 13, 14조(국별 데이터베이스 및 소비자 정보)

○ 집행위와 회원국들이 동 지침의 이행을 감시하는데 용이하도록 회원국 차원에서 포장 및 포장 폐기물 흐름의 크기,

특성 및 진화과정에 대한 정보교류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설립하도록 하고 또한, 소비자정보 프로그램도 98. 7 한 제정해야 함

○ EU의 폐기물지침(Waste Directive)에 따라, 각 회원국이 집행위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폐기물 관리 계획에는 포장폐기물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하며, 회원국들은 동 지침 이행을 위해 채택코자 하고 있는 조치들을 집행위에 송부해야 함. 집행위는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차. 제15조(경제조치 :Economic instrument)

○ EU는 동 지침의 목표달성을 위해 경제조치를 채택할 예정인 바, 공동체 차원의 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개별회원국은 독자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음. 단, 유사한 조치들은 오염자 부담원칙(PPP)과 같은 EU의 환경원칙과 여타 EU 조약상의 의무와 일치되어야 함

카. 제19조 - 21조(회원국 대표 위원회)

○ 회원국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집행위 관계관 주재)에서는 동 지침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드러난 문제점을 협의하고, 데이터베이스와 표시제도를 과학·기술 진보에 따라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들에 관해 합의를 보도록 함

2. 해 설

가. 지침의 성격

○ 동 지침은 기본적으로 규정(Regulation)이 아니고, 각 회원국 정부에 대해 지침을 준수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일종의 지시(Instruction)인 바, 업체는 이러한 국별조치를 따르기만 하면되고 회원국들은 96. 7. 한 동 지침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법령이나 조치를 도입해야 함

즉, 회원국들에 대해 상당한 융통성을 부여하게 되는 바, 합의된 조치들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국별기준 법령체계나 전통을 용이하게 대입할 수 있고, 기존유통체계, 소비자습관, 폐기물관리 인프라들을 고려하면서 시행할 수 있음. 따라서 회원국별 접근방식에 있어서 상당한 편차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정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보다 동 지침을 엄격하게 해석을 하여도 이를 잘못 이행하는 것으로 볼수 없음. 그리고 의무조항(예 : 목표달성)과 재량조항(예 : 재사용 제도 권장)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동 지침의 이행에 관한 사항은 EU 차원보다는

회원국별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바, 만일 어떤 회원국이 동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집행위나 여타 회원국이 구주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음

○ 동 지침은 어디까지나 포장폐기물의 생산을 방지하는데 주목적이 있었으므로, 초기안에서는 포장재의 1인당 무게제한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최종안에서는 생략된 바 있음. 그러나 향후에는 사전예방에 관한 집행위의 이니셔티브가 나올 가능성이 있음

나. 필수요건

○ 현재로서는 기준이 매우 주관적일 수 밖에 없으나, 기준이 발표되는 96. 7.1부터 보다 구체화된 유럽표준이 제정되게 됨. 98. 1. 1 부터는 필수요건을 충족치 못한 포장재는 EU내에서 금지되게 되어 있음

○ 새로운 유럽표준과 필수요건이 수립됨에 따라, 기업은 어차피 재사용, 재생 또는 복원에 유리한 디자인으로 나가게 될 것으로 보임

다. 제재조치

○ 동 지침에는 제재나 벌칙조항이 없으나, 회원국별 차원에서는 제재가 있을 수 있음. 집행위는 향후 5년간 추진상황을 검토하게 될 것인바, 집행위의 동 보고서를 기초로 이사회는 차기조치를 결정하게 될것임

○ 이와 관련, 특정산업분야가 목표달성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고, 따라서 2단계 실시기간중에는 어떠한 제한을 부과하고, 목표미달 경우에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음

반면에 Eco - balance 및 여타 과학조사 결과를 감안, 목표가 원래 잘못 설정되어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간과될 수도 있음

라. 목표치 달성

○ 복원 및 재생목표가 설정됨에 따라, 사용후 포장재가 폐기물 흐름과정에서 전용되어, 새로운 재료나 에너지로 전환될 수 밖에 없게 되었으며, 신규 복원 재생과 관련된 비용은 무역 및 산업계로 전가될 것임. 이에 따라 포장체인에 관련된 모든 기업으로 하여금 포장을 최소화 하는 유인책을 제공하게 됨

○ 65% 복원, 45% 재생목표는 상한선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참조치(Reference point)인 바, 회원국들이 자신들의 재생처리능력 이상으로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음. 그렇지 않을 경우, 여타 회원국으로 수출되어 수입국 수거제도의 경제적 운영을 저해하게 됨. (예:작년 독일의 폐기

물이 인근 화란과 불란서로 마이너스 가격으로 수출되어, 이들 국가들의 폐기물 관리 운영에 혼란 초래)

바. 회원국별 반환, 수거, 복원제도

○ 회원국에 따라 반환, 수거, 복원제도를 수립하거나 대신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구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도입하는 것이 현재 일반적 경향이나, 법적의무, 불준수에 따른 제재등 구체적인 상황은 국별로 상이함.

- 오지리와 같은 경우 ARA(Alstoff Recycling Austria)가 모든 폐기물의 수거책임을 맡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에는 DSD(Dual System Deutschland)가 가계 및 소기업의 폐기물만 수거하고 있음

- 오지리(ARA), 독일(DSD), 벨지움(Fost Plus), 불란서(Eco Emballages) 4개국의 경우, 기업이 상기 복원기구에 등록하여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면 Green Dot 로고를 부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김. 그러나 Green Dot가 반드시 모든 국가에서 시행되어야 하는 제도는 아님

○ 즉, Green Dot는 상업적 고유로고이며, 지침에서 언급된 표시제도의 일부가 아님. 로고 사용규칙은 동 로고가 사용되고 있는 국가의 복원기구에 의해 규율되며, 반드시 모든 국가에 동일하지는 않음

그러나 어떤 기업이 타회원국에서 제품을 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연히 동국의 국내법을 준수해야 하며, 통상 복원기구에 등록하여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

○ 사용료는 팩당 일정액 또는 1 Kg의 재료당 일정액등 다양하게 산정되고 있으나, 기본 목적은 해당기구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폐기물관리의 모든 비용을 업계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독일이나 오지리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높게 부과되고 있음

○ 산업포장품에 관련된 포장요건도 국별로 상이한 바, 포장재의 구분에 따라, 또는 최종 이용자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독일의 포장조례(Packaging Ordinance)에 의하면, 운송포장의 경우 제조업자나 유통업자가 재사용 또는 재생을 위해 반드시 이를 수거해야 할 의무가 있고

- 불란서 관계 법령의 경우에는 동 포장재의 소지자가 직접 재사용, 재생 또는 에너지 복원을 하거나, 이를 관장하는 제3의 등록업체에 이를 이전해야 할 의무를 지우고 있음

사. 재사용 장려 조치



○ 동 지침상 마스트리히트조약 또는 여타 EU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금지되지 아니한 어떠한 조치도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됨. 예를 들어 수입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가 되어서는 안되고, 국가 보조가 특정제품의 생산이나 기업을 유리하게 함으로써 경쟁을 왜곡하거나 왜곡할 가능성이 있어서는 안됨

○ 그러나, EU의 환경정책(제130조R)은 사전예방, 오염자 부담 환경피해 발생시 오염원 우선제거원칙에 기초하고 있으며, 환경보호가 공동체의 여타정책에 통합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EU의 관습법에 따르면 공동체의 필수목표의 하나인 환경보호가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에 예외를 합리화 할수 있게 되어있음

○ 상기 감안, 재사용 제도가 환경적으로 건전할 경우, 회원국들은 재사용이 불가능한 대안을 억제(Discourage)할수 있다는 의미가 됨(단, 예상되는 환경수익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이상으로 경쟁을 왜곡해서는 안된다는 전제조건하에), 따라서 결국은 각 개별 사안별로 환경적으로 건전함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수익을 어떻게 계량화하며, 경쟁왜곡과 어떻게 균형을 이루하는가에 달려있음

즉, 경제적 영향과 환경적 영향을 균형있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재사용제도 장려조치의 예로서 "벨지움의 음료용기에 대한 환경세(일정량이 재사용 가능병으로 생산되고, 재생목표를 충족할 경우 적용면제) 덴마크의 음료캔 금지 및 맥주, 탄산 음료수의 재사용 가능병 의무부과, 핀랜드의 재사용 불가 음료용기에 대한 환경세, 독일의 음료용기에 대한 의무예치금부과규정(재사용용기의 시판 몫이 91년 수준이하로 하락할 경우)등이 있음

○ 상기조치들이 동 지침의 발효에 따라, 폐지되거나 수정될지 여부는 상급 불투명하나 지침상의 장려의미는 금지보다는 덜 왜곡적인 것을 의미한다는 시각이 있음. 중요한 것은 회원국들이 재사용제도를 장려할 수는 있으나, 의무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임

아. 경제적 수단(Economic Instrument)

○ 회원국들은 경제적 수단을 채택할 수 있으나, 역시 의무적은 아님.

여기서는 비례성의 원칙(Proportionality)이 중요한 바, 작은(Minor)환경이익을 위한 경쟁의 커다란(Major) 왜곡은 허용 안됨

○ 이러한 관점에서 상기 벨지움의 환경세가 도전받을 수 있으나 문제는 지침상 장려의 의미가 어느정도 확정될 수 있느냐에 달려있음

○ 이와 관련, 집행위는 과세의 부담을 고용으로 부터 시장 왜곡이 없는 환경영향으로 전가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세를 주창하고 있음

이는 보다 광범위한 세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상이한 제품 유형이나 포장재간 차별을 두기 위한것이 아니고, 환경비용을 기업운영비에 통합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스웨덴은 장기간 운영되어오던 포장세를 폐지하고, 광범위한 환경영향에 입각한 세제를 도입한 바 있음

### 3. 향 후 평 가

○ 앞으로 동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별 조치계획외에 특정 포장재 유형에 대한 적용상 문제점, 중금속 제한 면제, 표시제도, 새로운 유럽표준, 2단계 계획등 세부적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구주차원에서 발전시켜나가기야 함

○ 그리고, 지침의 해석이 국별로 상이할 수 있고, 과학적 환경필요에 기초하지 않은 환경세가 부과됨으로써 지침의 남용여지 가능성도 있으므로 동 지침 적용상 엄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1988년 구주 재판소는 "Danish Bottle Case" 시 환경을 이유로 포장재의 자유로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으나, 환경보호와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간 균형점이 어디인지에 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음. 새로운 지침은 "회원국들은 필수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포장재에 대해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고, 정해진 범위내에서 복원, 재생하되 수거된 포장재 처리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목표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해 진일보하고 있다고 볼수 있음

○ 이로써 일반적 원칙과 공동틀(Framework)이 수립되고, 재생폐기물의 공급이나 처리능력개발에 있어서 회원국간 조정이 어느 정도 가능해 졌다고 볼수 있으나, 문제는 회원국들이 어느 정도 포장폐기물의 생산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지, 장려책의 일환으로 환경세를 과연 도입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볼수 있음